

# 한국체육대학교 훈련장 안전관리규정

제정 2012. 7.30. 규칙 제601호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“본교”이라 한다)의 전문실기 훈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훈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상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교에서 관리하는 훈련장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훈련장”이라 함은 전문실기 교수, 조교 및 학생이 훈련, 실험·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.
2. “안전관리총괄책임자”라 함은 본교의 훈련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.
3. “안전관리책임자”라 함은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각 종목의 훈련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.
4. “안전관리담당자”라 함은 훈련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“정”, “부” 안전관리담당자를 말한다.
5. “훈련종사자”라 함은 훈련장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등 훈련장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안전점검”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
## 제 2 장 사무분장 및 직무

**제4조(안전관리 총괄책임자)**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본교의 훈련장 안전관리를 총괄한다.

②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지휘·감독하며,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훈련처장)** ① 전문실기 훈련장의 학생수업 또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훈련처장이 된다.

② 안전관리책임자는 훈련장에 관하여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훈련장 안전관리위원회 운영
2. 전문실기 훈련장 관리 운영
3. 기타 전문실기 훈련장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

**제6조(안전관리담당자)**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훈련장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각 훈련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**별표 1**과 같다.

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훈련장과 그 사용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안전교육)** 안전관리담당자는 훈련장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안전점검)**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훈련장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안전점검 실시시기는 **별표 2**와 같다.

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,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9조(훈련장 안전수칙)**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훈련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훈련장 안전수칙을 각 해당 훈련장에 부착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## 제 4 장 안전관리위원회

**제10조(구성)** ① 훈련장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훈련처장, 교학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체육과학연구소장, 산학협력단장, 체육학과장의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훈련처장이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11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임무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훈련장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계획수립
2. 훈련장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이 규정을 위반한 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
4. 기타 훈련장 안전에 관한 사항

**제13조 (세칙)**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2012. 7. 30. 제601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전문실기 훈련장  
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(제6조 제2항 관련)

안전관리책임자	정 안전관리담당자	부 안전관리담당자 및 훈련종사자	비고
훈련처장	전문실기지도교수	전문실기지도교수, 조교	

<별표 2>

안전점검의 종류 및 시기(제8조 제2항 관련)

종 류	실 시 시 기
일상점검	매일 훈련을 시작하기 전 1회
정기점검	매년 1회 이상
특별안전점검	안전관리총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